해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2020누52759]



【전문】

【원고,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강대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검찰총장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20. 7. 24. 선고 2019구합81896 판결

【변론종결】2021. 12. 9.

【주문】

1

-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2.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5. 25.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0. 12. 6. 검찰서기로, 2016. 5. 16. 검찰주사보로 승진한 검찰공무원이다.
- 원고는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다가 2017. 7. 31. ○○지방검찰청으로 전보되어 2018. 7. 22.까지 총무과 재무팀에서 근무하였고, 2018. 7. 23.부터 2018. 10. 30.까지 총무과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8. 10. 31.부터는 형사부에서 공판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8. 11. 19. □□지방검찰청으로 전보되었다.

나. ○○지방검찰청은 2018. 10. 23.경부터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자체 감찰을 실시하였고, ◇◇고등검찰청은 2018. 11. 21.경부터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한 감찰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9. 3. 28.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4. 18.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9. 5. 1.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1.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원고는 2018. 2.~3.경 재무팀 회식자리에서 "요즘 A 수사관이 나를 좋아해서 저렇게 꾸미고 오는 것이다.
- "라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2018. 8.경 여러 직원이 있던 사건과 사무실에서 "B 선배 옷 입은 것 봐라. 나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고 온 것이다.
 - "라고 말하여 피해자 B를 성희롱하였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로써 원고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 1] 비위일람표 순번 1부터 13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성희롱 등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 2.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계속하여 원고는 2018. 6. 11. 피해자 J의 당직 근무일에 술에 취한 채 술을 사 당직실로 온 다음, 치킨을 주문하여 당직실 테이블에서 술자리를 시작한 후 욕을 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으로 당직업무를 방해하였다.
- 이로써 원고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1 비위일람표 순번 14부터 32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후배 수사관 및 신규 사무원 등에게 선배, 인사담당자로서 술자리 참석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였다.
- 3.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품위유지위반 또한 원고는 공용시설인 서귀포시 소재 검찰 전문화시설에 대한 공식적인 주말행사가 2018. 7. 14. 종료되었음에도 2018. 7. 20.부터 2018. 7. 22.까지 시설 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출장을 신청한다음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내는 등으로 위 검찰 전문화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
- 라. 원고는 2019. 5. 23.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7. 24.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유]

- 1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5. 25.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0. 12. 6. 검찰서기로, 2016. 5. 16. 검찰주사보로 승진한 검찰공무원이다.
- 원고는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다가 2017. 7. 31. ○○지방검찰청으로 전보되어 2018. 7. 22.까지 총무과 재무팀에서 근무하였고, 2018. 7. 23.부터 2018. 10. 30.까지 총무과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8. 10. 31.부터는 형사부에서 공판업무를 담당하였다.
- 원고는 2018. 11. 19. □□지방검찰청으로 전보되었다.
- 나. ○○지방검찰청은 2018. 10. 23.경부터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자체 감찰을 실시하였고, ◇◇고등검찰청은 2018. 11. 21.경부터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한 감찰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9. 3. 28.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4. 18.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9. 5. 1.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1.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원고는 2018. 2.~3.경 재무팀 회식자리에서 "요즘 A 수사관이 나를 좋아해서 저렇게 꾸미고 오는 것이다.
- "라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2018. 8.경 여러 직원이 있던 사건과 사무실에서 "B 선배 옷 입은 것 봐라. 나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고 온 것이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라고 말하여 피해자 B를 성희롱하였다.

- 이로써 원고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 1] 비위일람표 순번 1부터 13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성희롱 등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 2.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계속하여 원고는 2018. 6. 11. 피해자 J의 당직 근무일에 술에 취한 채 술을 사 당직실로 온 다음, 치킨을 주문하여 당직실 테이블에서 술자리를 시작한 후 욕을 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으로 당직업무를 방해하였다.
- 이로써 원고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1 비위일람표 순번 14부터 32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후배 수사관 및 신규 사무원 등에게 선배, 인사담당자로서 술자리 참석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였다.
- 3.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품위유지위반 또한 원고는 공용시설인 서귀포시 소재 검찰 전문화시설에 대한 공식적인 주말행사가 2018. 7. 14. 종료되었음에도 2018. 7. 20.부터 2018. 7. 22.까지 시설 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출장을 신청한다음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내는 등으로 위 검찰 전문화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
- 라. 원고는 2019. 5. 23.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7. 24.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